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대상과 주기를 정함.(안 제23조의3)
-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 없는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규정 삭제(안 제26조제4항)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하여 1년에 1회로 정함(안 제33조제2항)
- 이행강제금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3항)
-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하고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33조제4항)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3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는 「건축법」 제52조의2에 의거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설하는 조항임.
-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 안 제33조 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 부과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임.
-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감경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경기간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사항임.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33조(이행강제금)제3항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자진 시정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간은 당초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부과기간을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조례 내용
가평군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고양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과천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광명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광주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하
구리시	시정명령일 기간 내
군포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김포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남양주시	최초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동두천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
부천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남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수원시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시흥시	-
안성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일로부터 30일
안양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양주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
양평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여주시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연천군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
오산시	1년
용인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이천시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 일로부터 1년 이내
의왕시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 일부터 1년 이내
의정부시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파주시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년
포천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평택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하남시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화성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1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혼선을 방지
-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철거토록 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또한,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운영의 갱신 기준을 변경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표지를 정비

2. 주요내용

- 위탁운영 갱신 기준 변경(안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준 변경
 - ※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항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8조의2)
 -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2)
 -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
 - ※ '16.10.20.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관련임.
- 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 전액 감면(안 별표2)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을 감면
 - ※ 경기도 세정과-8884(2017.4.11.)호와 관련임.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삭제(안 별표 5)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0호 규정을 제외하고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그래픽 변경 및 표지판 문구 추가(안 별표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의 그래픽, 장애인접근성 표지 및 문구를 현행 기준(KS)에 맞게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안내표지에 물건적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문구 추가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5조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위탁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항목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함.
- 안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임.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18개시·군이고, 미반영 시군은 13개 시·군이며 서울특별시도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에서 2분의 1 완화규정 조례를 반영함.
- 안산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전체 59개소 중 56개소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41개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향후 건축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별표2는 전기자동차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임.

- 안 별표5는 「주차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7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표지판 문구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내용임.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1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빗물 등을 생활용수 및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 규정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시장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규정
- 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안 제4조)
 -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안 제5조)
 - 재처리수의 공급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
-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안 제6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소유자(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의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 시범사업 발굴, 교육·홍보, 시행규칙(안 제7조 ~ 제9조)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 사업비용의 보조 등 물 재이용 시책 추진.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검토의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시범사업 발굴)에서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대상과 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안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시설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에서 법령사항을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벗어난다는 입법 자문의견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